# 와물차위에서 코일 고정 중 코일이 넘어져 끼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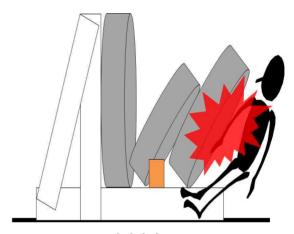
### 재 해 개 요

'14년 3월 대구시 달서구 소재 사업장의 철판코일 출하작업장에서 피재자가 철판코일을 차량 적재함에 적재한 후 레버풀러로 고정하는 도중 철판코일이 넘어지면서 피재자가 철판코일과 적재함 뒷문 사이에 끼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재해임

### 재해상황도



<가해물 : 철판코일>



<재해상황도>

# 재해발생상황

- 화물차의 적재대 위에는 코일이 적재되어 있었으며, 피재자가 가해물 코일(1,824kg×2EA)을 크레인으로 운반하여 내려놓은 후 레버풀러로 철판을 고정하는 도중 2개의 철판코일 코일이 넘어짐
- 철판코일이 뒤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 적재된 철판코일 사이에 고임목(65W×65H×950L)을 설치하여 앞쪽으로 기울여줌
- 철판코일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매는 등의 넘어짐 방지조치는 실시 하지 않은 상태 채 레버풀러로 작업을 실시함

## 재해발생 원인

- 철판코일이 넘어지지 않도록 적당한 방법으로 고정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나 이러한 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함
  - ※ 사고 차량의 코일 적재대는 코일의 넘어짐을 방지하기에 적당한 구조가 아니었음
- 중량물을 싣거나 내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순서 및 작업방법을 정하고,
 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여야 하나 이러한 안전조치 없이 피재자 단독으로
  중량물 작업을 실시함

## 동종재해 예방대책

- 중량물 취급 및 적재시에는 중량물이 넘어지지 않도록 구조적으로 안전 한 적재대를 구비하거나,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매는 등의 넘어짐 방지 조치를 실시해야 함
- 중량물을 싣거나 내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중량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여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함

# 관련 법규

- ▶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(전도의 방지)
  - ② 사업주는 제품, 자재, 부재 등의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. 다만, 근로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▶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(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)
  -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4에 따라 해당 작업, 작업장의 지형·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·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별표 4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.

【별표4】 중량물의 취급 작업 : 추락, 낙하, 전도, 협착, 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

- ▶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(작업지휘자의 지정)
- ① 사업주는 제38조 제1항 2호·제6호·제8호 및 제11호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지휘하여야 한다.